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1950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

판결 선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51,998원 및 그 중 97,172,790원에 대하여 2019.4. 12.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별지